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CHUBB®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원인 및 경로의 다양화, 정보 주체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등으로 인해 그 위험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초래하여 기업의 경영 환경까지 악화시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기인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위기관리컨설팅비용 및 실행비용 등을 통해 해당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인수 업종

개인정보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모든 업종 인수 가능

(단, 포털/유가증권 및 현금 등가물의 거래소 (가상화폐 포함)/SNS 제외)

주요 보상하는 손해

기본담보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 생년월일, 그 외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가 있어 그것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포함)을 총칭합니다.

확장담보(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위기발생 초기에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고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 가치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컨설팅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개인정보의 유출의 발견 시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래 비용

- 변호사 상담비용
- 위기(사고)의 원인 조사비용
- 전화회선의 중설, 통화료 또는 콜센터 위탁비용
-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 위로금·위문품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신체장애 및 재물의 멀실·훼손·오손·분실 또는 도난(단, 전자데이터의 경우는 제외)
- 초년도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유출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다른 피보험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단,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유출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상)
-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전문직업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 배상청구
-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일체의 신용 정보유출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특약으로 보장가능)
- 위로금·위문품 비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예상 사고 시나리오

- 1) 통신사 백업서버 해킹 피해로 인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 변호사 상담비용, 고객통지 비용 등의 위기 관리 실행비용 지급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참고
- 2) 캐피탈사 직원이 고의적으로 대출고객들의 정보를 출력하여 대출모집인에게 전달. 유출 피해 고객이 해당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
 - 손해배상책임금 지급
 -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지급
 -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 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확대 운영비용 등의 위기관리 실행비용 지급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기본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 (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손해」라고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참고

* 보상내용은 보험계약조건, 보험금지급관련 조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장점

-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DB형태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문서 혹은 서면상의 개인정보유출까지도 보상범위에 포함
- 고객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시에도 보상
- 폐기된 개인정보의 유출 시에도 보상
- 발견되지 않은 초년도계약 보험개시일 이전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하여 보험 기간 중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

처브그룹 소개

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액자산 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1,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 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약 34,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98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금융보험부
Financial Lines
Property & Casualty Division
E_FinLines.KR@chubb.com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에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영업일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 험에 정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취소신청주소: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리아나타워 14층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 위치: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리아나타워 14층
(고객서비스센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보험금 지급 사유와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개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자급 및 자급제한

보험금의 자급

보험자는 지급보험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 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 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

보험금의 자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이 일반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안내)

계약의 해지·사망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의 해지·사망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외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 이경과 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0조 제2항).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려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시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전화번호: 1566-5800(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주소: www.chubbaom.kr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
(www.fss.or.kr/도번없이 1332)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기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작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 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 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서 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기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지·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hubb. Insured.SM